

<p>제2021-204호 2021년 11월 1일(월)</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468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1-469호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1-2895호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15
- 여수시 공고 제2021-2907호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53
- 여수시 공고 제2021-2908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54
- 여수시 공고 제2021-2919호 공인등록 공고(여수시 공고 제2021-2919호) 55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669호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여수시 조례 제1670호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60
- 여수시 조례 제1671호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63
- 여수시 조례 제1672호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 여수시 조례 제1673호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73
- 여수시 조례 제1674호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6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01.

여 수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호적발생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3길 28 (덕충동)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781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3길 28 (덕충동)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내리길 54-6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변철리 668-1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내리길 54-8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안심산길 31 (안산동)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동 450-2	전라남도 여수시 안심산길 31 (안산동)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317-2		20211029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영역을 반영	건물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530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319	20211029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영역을 반영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639-2 (상암동)		20211029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상암마을을 반영	건물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511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4길 5 (상암동)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로 49-1 (미평동)		20211029	20091013	미평동 행정구역명 반영	건물철거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258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로 49-1 (미평동)	20211029	20091013	미평동 행정구역명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33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168-3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36, 34, 37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1168-14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을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면 죽림리 1195-4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면 죽림3길 17-7	20211029	20111114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면 관기리 832-1, 833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면 청무2길 41-12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558, 558-1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두문포길 7-9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384-11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8길 140-10 (묘도동)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심정리 236-2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장지길 23	20211029	20080911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선월동 1270-9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4길 39-7 (선월동)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1344-3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우개길 186	20211029	20120316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면 관기리 343-5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면 화양로 1935-8	20211029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화양면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80-3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5길 18-6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면 복산리 883-20, 877-2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면 대곡해안길 253-12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리 58-1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봉전길 89	20211029	20091013	도로명 및 구간변경		
건물번호변경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로 47-2 (봉강동)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2길 47-2 (봉강동)	20211029	20091013	지역 및 위치예측성 고려	실제 출입하는 건물의 도로명주소로 일치 시키기 위함.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여문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 합니다.

2021. 11. 1.

여 수 시 장

1.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붙임
2. 여수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 결정 도면 : 붙임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3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여문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2021. 10.



I. 여문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개요

1. 공원구역 결정조서

구분	시설번호	시설의 구분	시설의 명칭	면적(㎡)	위 치	비 고
기정	13	근린공원	여문공원	39,030.0	여문시역사*210필지	

2. 조성계획 변경 사유서

○ 근린공원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화장실 신설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2. 공원지정 및 결정현황

○ 공원지정 년월일: 1988. 10. 18. (건설부 고시 제448호)

○ 조성계획 결정사항: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3. 법적 검토사항

○ 공원시설유: 당초 89.4% --> 변경 89.5%(법정 40% 이하)

○ 공원전체유: 당초 8.68% --> 변경 8.71(법정 20%이하)

4. 토지이용계획표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구성비 (%)	건 속 른		비 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기정		89,080.00	100.00	8	2,681.90	8,690.10	건축율 : 8.68%
	변경		89,080.00	100.00	8	2,818.08	8,848.28	건축율 : 8.71%
시설소계	기정		16,878.28	89.4	8	2,681.90	8,690.10	
	변경		16,429.48	89.5	8	2,818.08	8,848.28	
드림릿 광장	기정	드림릿 광장	7,929.68	20.8		-	-	
	변경	드림릿 광장	7,929.68	20.8				
조경시설	기정	경자화 17공	854.80	0.9		-	-	
	변경	경자화 17공	854.80	0.9				
휴양시설	기정	휴게소 외 1공	275.10	0.7		-	-	
	변경	휴게소 외 1공	275.10	0.7				
유원시설	기정	어린이놀이터	154.00	0.4				
	변경	어린이놀이터	154.00	0.4				
운동시설	기정	체력단련장 외 4공	2,874.00	8.1		-	-	
	변경	체력단련장 외 4공	2,874.00	8.1				
교양시설	기정	도서관 외 1공	1,889.80	5.0	1	1,102.80	2,274.60	
	변경	도서관 외 1공	1,889.80	5.0	1	1,102.80	2,274.60	
편의시설	기정	주차장 외 1공	2,289.70	6.9	1	1,428.00	4,284.00	
	변경	주차장 외 1공	2,846.88	8.0	1	1,484.18	4,840.18	
관리시설	기정	케니스깅 관리사 외 2공	68.80	0.1	1	81.60	81.60	
	변경	케니스깅 관리사 외 2공	68.80	0.1	1	81.60	81.60	
부 지	기정		28,668.72	80.8				
	변경		28,800.54	80.5				

II. 도시계획시설(여문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조성계획 총괄표

시설 구분	변경 구분	시설 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건물동수 (공작물)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공원 시설	기정		15,373.28	15,373.28	2,561.90	6,590.1	3동(100기)	
	변경		15,429.46	15,429.46	2,618.08	6,590.1	3동(100기)	
도로 광장	기정		7,929.58	-	-	-	-	-
	변경		7,929.58	-	-	-	-	-
조경 시설	기정		354.30	-	-	-	(29기)	-
	변경		354.30	-	-	-	(29기)	-
휴양 시설	기정		275.10	-	-	-	(50기)	-
	변경		275.10	-	-	-	(50기)	-
유 희 시설	기정		154.00	-	-	-	-	-
	변경		154.00	-	-	-	-	-
운동 시설	기정		2,374.00	-	-	-	(16기)	-
	변경		2,374.00	-	-	-	(16기)	-
교양 시설	기정		1,939.80	-	1,102.30	2,274.5	1동	3층
	변경		1,939.80	-	1,102.30	2,274.5	1동	3층
편의 시설	기정		2,289.70	-	1,428.00	4,284.0	1동(2기)	-
	변경		2,345.88	-	1,484.18	4,340.2	2동(2기)	-
관리 시설	기정		56.80	-	31.60	31.6	1동(3기)	-
	변경		56.80	-	31.60	31.6	1동(3기)	-
녹 지	기정		23,656.72					
	변경		23,600.54					

2. 시설 결정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 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물(㎡)		건물동수 (공각들)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99,030.00	2,561.90	6,590.10	3동(100기)	
	변경				99,030.00	2,613.03	6,646.23	4동(100기)	
공원 시설	기정		합 계		15,373.23	2,561.90	6,590.10	3동(100기)	
	변경				15,429.46	2,613.03	6,646.23	4동(100기)	
도로	기정		소 계		7,929.53	-	-		
	변경				7,929.53				
	기정		도 로	전 지역	6,473.13				
	변경		도 로	전 지역	6,473.13				
	기정	1	광 장		1,456.40	-	-		
	기정	1-1	광장 1	1 구역	302.70	-	-		
	기정	1-4	광장 4	3 구역	45.20	-	-		
	기정	1-2	광장 2	1 구역	244.10	-	-		
	기정	1-3	광장 3	2 구역	364.40	-	-		
조경 시설	기정		소 계		354.30	-	-	(29기)	
	변경				354.30			(29기)	
	기정	2	경 차	3 구역	33.80	-	-	1기	
	기정	3	연 못	1 구역	147.70	-	-		
	기정	4	실개천	1 구역	55.90	-	-		
	기정	5	벽천	1 구역	112.10	-	-		
	기정	㉠	태양광과고라	1 구역				1기	
	기정	㉠	태양광분수	1 구역					
	기정	㉡	장과고라	전 지역	-	-	-	2기	
	기정	㉢	사각분터	1 구역	-	-	-	2기	
	기정	㉣	과고라A	2 구역	-	-	-	1기	
	기정	㉤	과고라B	2 구역	-	-	-	1기	
	기정	㉥	연못 내 분터	1 구역	-	-	-	1기	
	기정	㉦	연못 내 데크	1 구역	-	-	-	1기	
	기정	㉧	연계이미지줄	2 구역	-	-	-	12기	
	기정	㉨	축계의 마당	2 구역	-	-	-	1기	조명등
	기정	㉩	여림	2 구역	-	-	-	2기	조명등
	기정	㉪	헬문	2 구역	-	-	-	1기	조명등
	기정	㉫	바닥분수	2 구역	-	-	-	1기	

2. 시설 결정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물(㎡)		건물동수 (공각동)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275.10	-	-	(50기)		
	변경				275.10			(50기)		
휴게 시설	기정	8	휴게소		275.10	-	-			
	변경	8	휴게소		275.10					
	기정	8-3	휴게소 3	2 구역	119.90	-	-			
	기정	8-5	휴게소 5	3 구역	44.80	-	-			
	기정	8-4	휴게소 4	3 구역	22.80	-	-			
	기정	8-1	휴게소 1	1 구역	87.80	-	-			
	기정	㉔	벤치	전 지역	-	-	-	49기		
	기정	㉕	야외탁자	1 구역	-	-	-	1기		
유희 시설	기정		소 계		154.00	-	-			
	변경				154.00	-	-			
	기정	7		어린이놀이터	2 구역	154.00	-	-		
운동 시설	기정		소 계		2,374.00	-	-	(16기)		
	변경				2,374.00			(16기)		
	기정	3		체력단련장	3 구역	115.80	-	-		
	기정	3-1		체력단련장 1	3 구역	19.40	-	-		
	기정	3-2		체력단련장 2	3 구역	18.80	-	-		
	기정	3-3		체력단련장 3	3 구역	48.80	-	-		
	기정	3-4		체력단련장 4	3 구역	81.80	-	-		
	기정	9	테니스장	1 구역	1,398.00	-	-			
	기정	10	다목적운동장	3 구역	582.20	-	-			
	기정	㉖	농구대	3 구역	-	-	-	1기		
	기정	㉗	체력단련시설	전 지역	-	-	-	15기		
교양 시설	기정		소 계		1,939.80	1,102.80	2,274.60	1동	3층	
	변경				1,939.80	1,102.80	2,274.60	1동	3층	
	기정	11		도서관	1 구역	1,708.20	1,102.80	2,274.60	1동	3층
	기정	12		공연무대	2 구역	231.60				

2. 시설 결정조서

시설 구분	변경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물(㎡)		건물동수 (공각들)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 시설	기정		소 계		2,289.70	1,428.00	4,284.00	1동(2기)	
	변경				2,845.88	1,484.18	4,840.18	2동(2기)	
	기정	13	주차장		2,289.70	1,428.00	4,284.00	1동	3층
	기정	13-1	주차장 1	1 구역	281.50	-	-		
	기정	13-2	주차장 2	3 구역	2,058.20	1,428.00	4,284.00	1동	3층
	기정	㉔	육교	2 구역				2기	
	신설	15	화장실	3구역	58.18	58.18	58.18	1동	1층
관리 시설	기정		소 계		58.80	31.60	31.60	1동(3기)	
	변경				58.80	31.60	31.60	1동(3기)	
	기정	14	메니스장 관리자	1 구역	58.80	31.60	31.60	1동	1층
	기정	13	자가발전시설	1 구역	-	-	-	1기	
	기정	㉔	안내관	2 구역				2기	
녹지	기정		소 계		23,858.72				
	변경				23,800.54				

3. 도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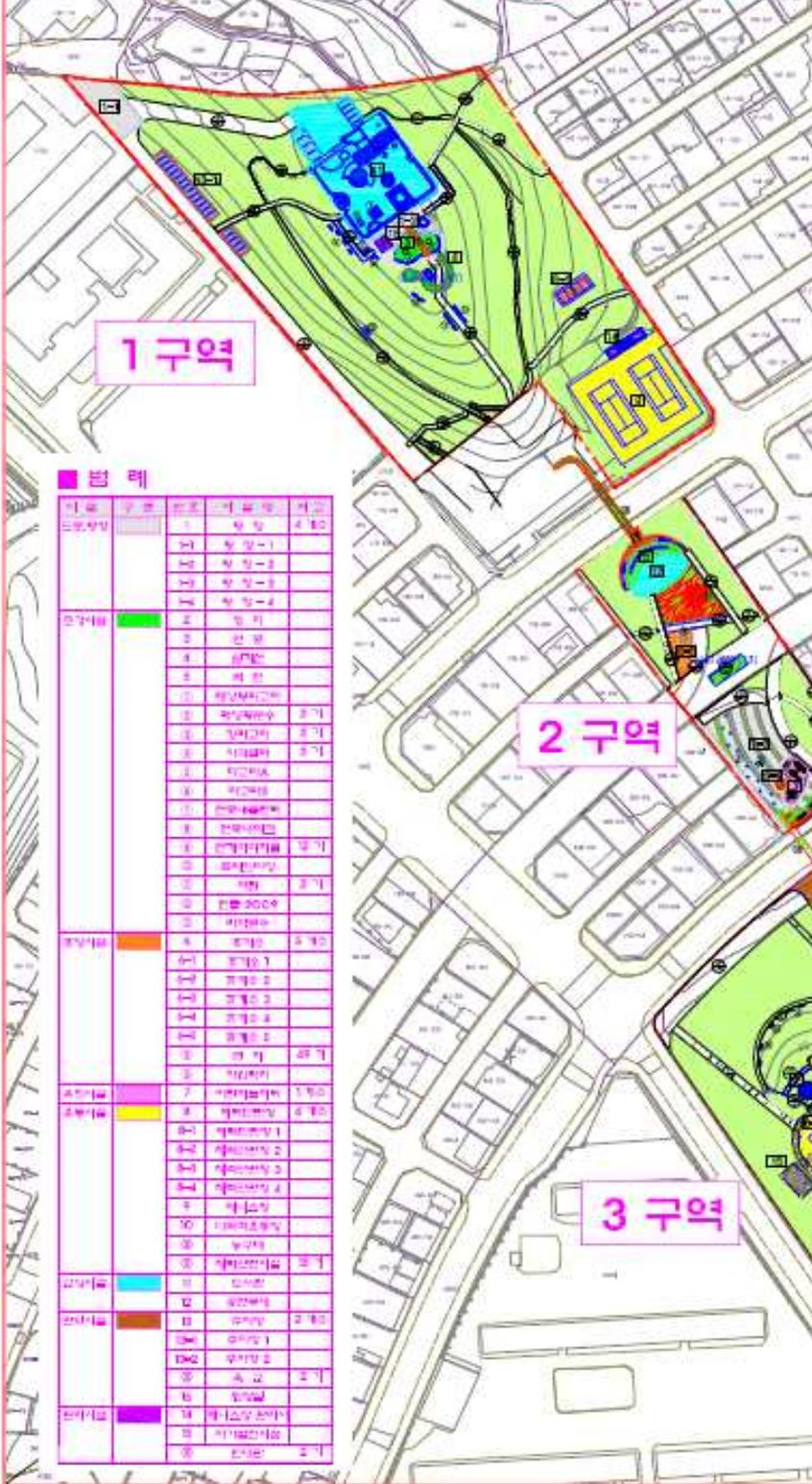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결	종결	비고
기결			합계			6,473.2				
변경			합계			6,473.2				
기결	중로		소계			675.0				
변경						675.0				
기결		2	1	15.0	45.0	675.0	시설연결	2구역 동측경계	2구역 서측경계	
기결	소로		소계			615.2				
변경						615.2				
기결		2	1	8.0	75.0	615.2		3구역 북측경계	주차장 2	
기결	소로		소계			3,835.1				
변경						3,835.1				
기결		3	1	6.0	62.6	375.6	진입로	광장 1	도서관	
기결			2	2.0	41.4	82.8	진입로	1구역 동측경계	도서관	
기결			3	2.0	50.7	101.4	연결로	소로 3-2	도서관	
기결			4	2.0	40.1	80.2	진입로	1구역 동측경계	소로 3-2	
기결			5	6.0	170.2	941.1	진입로	1구역 남서측경계	주차장 1	
기결			6	2.5	64.5	161.3	연결로	산책로 11	연못	
기결			7	2.0	49.5	99.0	진입로	1구역 동측경계	산책로 11	
기결			8	2.5	9.6	24.0	진입로	2구역 서측경계	소로 3-11	
기결			9	2.5	25.2	63.0	연결로	소로 3-11	소로 3-10	
기결			10	2.5	38.3	95.8	연결로	중로 2-1	육교	
기결			11	2.5	33.7	84.3	연결로	중로 2-1	육교	
기결			12	6.0	14.9	89.4	연결로	중로 2-1	소로 3-9	
기결			13	2.5	7.1	17.8	진입로	2구역 동측경계	소로 3-10	
기결			14	5.5	27.5	151.3	연결로	중로 2-1	소로 3-16	
기결			15	2.5	35.5	88.8	연결로	소로 3-16	소로 3-16	
기결			16	5.0	63.2	316.0	진입로	2구역 남측경계	중로 2-1	
기결			17	2.5	11.8	29.5	진입로	2구역 남측경계	소로 3-16	
기결			18	1.5	56.6	84.9	진입로	3구역 북측경계	주차장 2	
기결			19	4.0	75.0	300.0	연결로	2구역 북측경계	주차장 2	
기결			20	2.0	73.1	146.2	진입로	소3-24	산책로 1	
기결			21	3.0	55.2	165.6	진입로	소3-24	산책로 1	
기결			22	3.0	102.3	306.9	연결로	주차장 2	광장 2	
기결			23	4.3	7.1	30.5	진입로	3구역 남측경계	광장 2	

3. 도로 결정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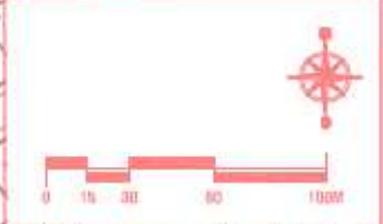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 인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결	종 결	비 고
기정	산책로		소 계			1,347.9	산책로			
변경						1,347.9	산책로			
기정			1	2.0	117.5	285.0	산책로	소로3-3	소로3-3	
기정			2	1.5	54.8	81.9	산책로	소로3-4	소로3-14	
기정			3	1.5	65.7	98.8	산책로	소로3-14	소로3-3	
기정			4	1.5	17.0	25.5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1	
기정			5	1.5	218.0	527.0	산책로	산책로 4	채리단던장3	
기정			6	1.5	44.3	66.5	산책로	소로3-5	도서관	
기정			7	1.2	36.5	48.8	산책로	소로3-8	도서관	
기정			8	1.5	14.8	22.2	산책로	소로3-5	광장 3	
기정			9	1.5	25.2	37.8	산책로	광장 3	소로3-8	
기정			10	1.2	149.7	164.4	산책로	소로3-5	소로3-6	
기정			11	1.2	109.4	119.4	산책로	소로3-6	소로3-2	
기정			12	1.5	27.2	40.8	산책로	소로3-2	산책로 11	
기정			13	1.5	41.1	61.7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15	
기정			14	1.2	13.7	23.4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6	

여수금반공원 조상계획중첩도

SCALE = 1 / 800



계획명	여수금반공원 조상계획(안)
위 치	여수시 문수동 칠현
시정명	여수시
도면명	조상계획중첩도(안)
SCALE	1 / 800
Drawing No.	008
제출년	2021. 10.
제출처	반정공방



■ 범 례

이름	구분	번호	이름	비고
도로부설		1	방 길	4 호
		2	방 길-1	
		3	방 길-2	
		4	방 길-3	
주차장		5	주차	
		6	전 보	
		7	공기	
		8	공기	
		9	공기	
		10	공기	
		11	공기	
		12	공기	
		13	공기	
		14	공기	
		15	공기	
		수변시설		16
17	수변			
18	수변			
19	수변			
수변시설		20	수변	4 호
		21	수변	
		22	수변	
		23	수변	
수변시설		24	수변	4 호
		25	수변	
		26	수변	
		27	수변	
수변시설		28	수변	4 호
		29	수변	
		30	수변	
		31	수변	
수변시설		32	수변	4 호
		33	수변	
		34	수변	
		35	수변	
수변시설		36	수변	4 호
		37	수변	
		38	수변	
		39	수변	
수변시설		40	수변	4 호
		41	수변	
		42	수변	
		43	수변	
수변시설		44	수변	4 호
		45	수변	
		46	수변	
		47	수변	
수변시설		48	수변	4 호
		49	수변	
		50	수변	
		51	수변	
수변시설		52	수변	4 호
		53	수변	
		54	수변	
		55	수변	
수변시설		56	수변	4 호
		57	수변	
		58	수변	
		59	수변	
수변시설		60	수변	4 호
		61	수변	
		62	수변	
		63	수변	
수변시설		64	수변	4 호
		65	수변	
		66	수변	
		67	수변	
수변시설		68	수변	4 호
		69	수변	
		70	수변	
		71	수변	
수변시설		72	수변	4 호
		73	수변	
		74	수변	
		75	수변	
수변시설		76	수변	4 호
		77	수변	
		78	수변	
		79	수변	
수변시설		80	수변	4 호
		81	수변	
		82	수변	
		83	수변	
수변시설		84	수변	4 호
		85	수변	
		86	수변	
		87	수변	
수변시설		88	수변	4 호
		89	수변	
		90	수변	
		91	수변	
수변시설		92	수변	4 호
		93	수변	
		94	수변	
		95	수변	
수변시설		96	수변	4 호
		97	수변	
		98	수변	
		99	수변	
수변시설		100	수변	4 호
		101	수변	
		102	수변	
		103	수변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관련법 시행규칙 제21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및 제10조,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여 수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여수시 만성로 173	연면적 398.16㎡ (지상 1층)	사무실, 생활실 4, 거실 2, 다목적실, 조리실 등

2. 위탁운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3. 위탁사무의 내용

업 무 명	사 업 내 용
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 시설 거주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 시설 거주장애인 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그 밖의 시설 거주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4. 신청 자격(아래 항목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장애인복지시설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타시설 시설장과 겸직불가

5. 신청제외 대상

- 타 법인 및 단체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법인, 단체의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 법인대표와 임원 및 시설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 받은 운영체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기관(운영주체)
- ※ 수탁자 선정 후 제외사유 발견 시, 수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함.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위탁을 취소한다.
- 위탁 범위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준하며,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타 법인·단체의 전입금 및 후원금 등으로 충당해야 함.
- 시설공간은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수탁자는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함.
- 시설의 운영은 공공성·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종교·정치)의 활동을 금함.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과 직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2021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함.
-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법인 선정 후 별도 협약에 의함.

- 수탁자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수탁 신청서의 ‘법인 재정부담 약정서’ 를 자체 부담액으로 확정하고 법인은 매년 약정금액을 출연하여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함.

7. 공고 및 접수

- 공모 기간 : 2021. 11. 1. ~ 11. 11. (10일간)
- 접수 기간 : 2021. 11. 9. ~ 11. 11. (3일간)
 - ※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로 함
- 접수 장소 : 여수시청 노인장애인과(본관 2층)
-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인터넷 접수는 불가)
 - ※ 근무시간 외 도착 서류 및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서류(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게시)
 - 1) 위탁운영 신청서 1부 (붙임 1)
 - 법인설립허가증 1부, 위탁 신청 법인이사회 의결 회의록 1부
 - 2) 법인(단체)현황 (붙임 2)
 - 3) 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붙임 3)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4) 재산 현황(자산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붙임 4)
 - 5) 각서 1부 (붙임 5)
 - 6)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1부 (붙임 6)
 -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7) 시설 위탁운영 신청 이사회 회의록 (붙임 7)
 -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붙임 8)
 - 법인대표, 시설장(내정자), 법인이사·감사 모두 제출
 -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 9)
 - 10) 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 10)
 - 11) 위임장(붙임11) : 법인의 대리인이 위탁신청서류 접수할 경우
 - 12) 위탁 선정 심사관련 일체 (붙임12)
 - 13) 위탁사업 운영계획서 (붙임13)
 - 14) 서약서 (붙임14)

- ※ 1. 제출서류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2. 신청서류는 원본1부, 사본12부로 제본항 총13부(A4 좌편철 책자)
 - 사본 12부는 주민등록 뒷번호 별표 처리
 - 3. 제출서류 1)~ 14)까지 순서별로 편철 후 증빙자료 순서별 별첨(라벨부착)
 - 4. 사업계획서 및 요약계획서는 파일 포함 제출
 - 5. 제본 시 책자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입
 - 6. 신청서류 작성은 서식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작성
 - 7. 별도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 문의 :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61-659-3731, FAX 061-659-5821, 팩스 송부 시 전언 통지 요망)

8. 선정방법 및 심사 발표

- 개최일정 : 신청 기관에 개최일 및 장소 개별 통보
- 내 용 : 수탁응모자 사업 설명 및 사업내용 등 심사
- 선정방법 : 심사지표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사업계획 설명-프리젠테이션) 심사
 - 심의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7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를 수탁법인으로 선정
 - 재공고 후 신청접수 결과 단독 신청한 경우에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심의를 실시하며, 심의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70점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재공고
- 동점 시
 - ① 법인의 적격성 ②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실적 ③ 시설장 및 종사자 ④ 사업계획의 전문성 ⑤ 재정 순으로 결정, 그래도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함.
- 수탁운영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등 설명
 - 법인 대표자 또는 시설장(내정자)의 사업 설명 및 질의답변
 - ※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 법인 대표자와 시설장(내정자)의 동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는 대리(위임장 제출) 참석 가능하나, 발표는 시설장(내정자)이 하여야 함.
 - 설명시간 : 신청 접수순으로 설명 15분(프리젠테이션 등), 질의응답 15분
 - 발표자료 : PPT 출력물은 제본하여 책자와 전산파일 제출
 - ※ 제출일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전 까지(별도 통보)

- 선정발표 : 여수시청 홈페이지 공고
- 협약체결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자는 여수시에서 정한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탁법인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를 수탁법인으로 선정하고 협약 체결할 수 있음.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추가제출은 불가함.
다만, 공고 기관의 요청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관련 사전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계 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에게 있음.
- 모집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일정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및 여수시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수탁자로 결정 통지 받은 자는 지정 일까지 협약을 체결해야하며, 위탁 조건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수탁자 선정 후 작성된 위수탁계약서는 공증하며 비용은 수탁자 부담임
- 신청하는 법인은 협약서 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안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노인장애인과(☎061-659-37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심사기준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 별표2)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 문항(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가. 수탁자의 적격성 (42)	A. 법인의 적격성 (18)	A1. 법인의 유형,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복지시설 수탁의 연계성은?	4	3	2	1	
		A2. 법인의 이사회 구성(외부이사 구성 등)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4	3	2	1	
		A3. 법인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4	3	2	1	* 신생법인 제외
		A4. 최근 5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및 조치 결과는?	4	3	2	1	* 신생법인 제외
		A5. 법인이 시설과 같은 지자체에 속해있는가?	2	-	1	-	
	B. 법인의 사업능력 (24)	B1.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주사무소 마련, 담당직원 등)을 갖추고 있는가?	4	3	2	1	
		B2. 법인의 이사회 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4	3	2	1	
		B3.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4	3	2	1	
		B4. 신청 법인의 사업수익, 후원금 정도는 ?	4	3	2	1	
		B5.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사업의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4	3	2	1	* 신생법인 제외
		B6.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수탁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4	3	2	1	* 신생법인 제외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8)	C. 시설장 및 종사자 (20)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및 시설운영능력은?	4	3	2	1	
		C2. 종사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의 계획은 어떠한가?	8	5	2	-	
		C3.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지위보장 계획의 적정성은?	8	5	2	-	
	D. 사업계획의 전문성 (12)	D1.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은 구체적이고 적정한가?	6	4	2	-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는?	6	4	2	-	
	E. 재정 (16)	E1. 재정운영을 위한 자부담 확보방안은 어떠한가?	4	3	2	1	
		E2. 운영할 복지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은?	8	5	2	-	
		E3.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은 어떠한가?	4	3	2	1	
	다. 지역사회 공신력 (8)	F. 지역사회 관계 (8)	F1. 사업계획서상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및 네트워크 관리계획은 어떠한가?	4	3	2	1
F2. 지역민의 욕구 만족 및 이용을 위한 계획은 어떠한가?			4	3	2	1	
라. 종합 의견 (2)	G. 종합 의견 (2)	G1. 심사위원 종합의견	2	-	1	-	
계			100	68	42	15	

* A4, B5, B6 는 신생법인 미해당 항목으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88점 만점으로 채점 후 100점 환산
 ※ 신생법인 산식 = 취득점수 + {신생법인 미해당 점수(제외)}×(취득점수/총점수)=최종점수

11.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1. 위탁 운영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 위탁 신청 법인이사회 의결 회의록(사본)	- 서식 1 (별첨)
2. 법인(단체) 현황	- 서식 2 (별첨)
3. 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 - 법인 인감증명서(용도 : 위탁 신청용)	- 서식 3 (별첨)
4. 재산현황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공시지가 확인원 • 건물 : 등기부등본 공통 • 단독주택 : 주택가격 확인원 • 상가 : 재산세 과세증명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동산(금융재산 및 부채내역) : 공문시행일 현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성 예금만 인정) • 부채증명서(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사에서 발행한 개인신용정보 보고서 제출) 	- 서식 4 (별첨)
5. 각서	- 서식 5 (별첨)
6.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 서식 6 (별첨)
7. 시설 위탁운영 신청 이사회 회의록	- 서식 7 (별첨)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법인대표, 시설장(내정자), 법인이사·감사 모두 제출	- 서식 8 (별첨)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등 모두 제출)	- 서식 9 (별첨)
10. 장애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등 모두 제출)	- 서식 10 (별첨)
11. 위임장 : 법인의 대리인이 위탁신청서류 접수할 경우	- 서식 11 (별첨)
12.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수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신청의 배경과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적격성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연혁, 운영규정, 이사회회의록 사본,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외부추천이사 관련 증빙 서류 등 • 법인의 사업능력 - 법인 운영규정, 법인 산하시설 운영규정, 산하시설 종사 교육관련 증빙자료, 사무실 소유 및 임대 관련서류, 등기부등본, 후원금 내역 등 □ 사업계획 및 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구성 : 이력서, 소지 자격증사본, 시설장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복리후생계획 등 • 사업계획 : 운영 및 사업 계획서, 조직, 인력배치, 예산서, 비전과 목표, 중장기 계획안, 연도별 실행계획안(위탁5년간) • 재정: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 사본, 재정투자 계획, 최근 5년간 법인 재무제표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관계 - 사업계획서, 홍보계획 관련 자료 	- 서식 12 (별첨)
13. 수탁사업 운영계획서 - 운영규정,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사본), 법인재정부담약정서 등 증명서류	- 서식 13 (별첨)
14. 서약서	- 서식 14 (별첨)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탁신청서류

○ ○ ○ ○ ○ ○ ○ 법인

제출자료 목차

제출서류	비고
1. 위탁 운영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 위탁 신청 법인이사회 의결 회의록(사본)	- 서식 1 (별첨)
2. 법인(단체) 현황	- 서식 2 (별첨)
3. 법인 대표자 사증 인감계 - 법인 인감증명서(용도 : 위탁 신청용)	- 서식 3 (별첨)
4. 재산현황 □ 부동산 관련 재산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 공시지가 확인원 • 건물 : 등기부등본 공동 • 단독주택 : 주택가격 확인원 • 상가 : 재산세 과세증명 • 아파트, 다세대, 연립 : 공동주택가격확인원 □ 동산(금융재산 및 부채내역) : 공문시행일 현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잔액증명서(정기성 예금만 인정) • 부채증명서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평가)사에서 발행한 개인신용정보 보고서 제출) 	- 서식 4 (별첨)
5. 각서	- 서식 5 (별첨)
6.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 서식 6 (별첨)
7. 시설 위탁운영 신청 이사회 회의록	- 서식 7 (별첨)
8.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법인대표, 시설장(내정자), 법인이사·감사 모두 제출	- 서식 8 (별첨)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등 모두 제출)	- 서식 9 (별첨)
10. 장애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등 모두 제출)	- 서식 10 (별첨)
11. 위임장 : 법인의 대리인이 위탁신청서류 접수할 경우	- 서식 11 (별첨)
12.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수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및 신청의 배경과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적격성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연혁, 운영규정, 이사회회의록 사본,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외부추천이사 관련 증빙 서류 등 • 법인의 사업능력 - 법인 운영규정, 법인 산하시설 운영규정, 산하시설 종사 교육관련 증빙자료, 사무실 소유 및 임대 관련서류, 등기부등본, 후원금 내역 등 □ 사업계획 및 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구성 : 이력서, 소지 자격증사본, 시설장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복리후생계획 등 • 사업계획 : 운영 및 사업 계획서, 조직, 인력배치, 예산서, 비전과 목표, 중장기 계획안, 연도별 실행계획안(위탁5년간) • 재정: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 사본, 재정투자 계획, 최근 5년간 법인 재무제표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관계 - 사업계획서, 홍보계획 관련 자료 	- 서식 12 (별첨)
13. 수탁사업 운영계획서 - 운영규정,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사본), 법인재정부담약정서 등 증명서류	- 서식 13 (별첨)
14. 서약서	- 서식 14 (별첨)

【서식2】

법인(단체) 현황

1. 명 칭 :
2. 소 재 지 :
3. 설립근거 및 목적 :
4. 대 표 자 :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요 이 력

5. 임 원 현 황

○ 임원 명(이사 , 감사)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임기	소유자격	비 고

첨부서류 :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임원 이력서, 소지자격증 사본 등

6.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주 요 연 혁

7. 주 요 사 업 내 용

8. 법인·단체의 기구(도표)

년 월 일

제출 법인·단체 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서식4】

재 산 현 황

※ 작성 기준일 : 공고일 전일

□ 법인·단체 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A+B+C)	순 자 산			부채(C)	비고
		계	부동산(A)	동산(B)		
합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보통재산)						

□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2)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m^2	총가액 (백만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비고란에는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2)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표	총가액 (백만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비고란에는 현 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2. 수익용 기본재산 * 임대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2)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 m^2	총가액 (백만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m^2)	소유자 (등기부상)	총가액 (천원)	연간수입 (백만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용도)
계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은 구체적으로 기재(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3. 기타재산(보통재산)

동산형태	금액(천원)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 고
계			

* 공고일 전일 기준(예산잔액증명서, 유가증권, 공공증서로 첨부)

4. 부채현황 (증빙자료 첨부를 통한 신뢰도 증명 필요)

구분	부채금액(천원)	채권자	상환조건	상환일자
계				

* 첨부서류: 부채증명서

5. 최근 5년간 법인 연간수입액 : 천원

수입내역	금 액	비 고
계		
수 익 사 업		판매, 관리, 생산 등
재 산 사 업		임대료 등
회 비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후 원 금		종교단체 등
해 외 보 조 금		사회단체사업 등
기 타		

* 연도별 별도 작성

【서식5】

각 서

- 법인·단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법인(단체)은 이번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탁법인(단체) 공모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은 물론 수탁법인(단체) 선정심의 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 법인(단체)으로 선정 될 시 위·수탁 협약체결 등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법인·단체명 : (직인)
대표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재정부담 약정서

_____은(는)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사업비 보충 및 장비·비품구입 등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 할 것을 약속합니다.

○ 법인 자부담 지원방법

(단위: 천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방 법	비 고
합 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 . .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 ※ 증빙서류 첨부 : 법인 부담 출연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 ※ 위탁법인으로 결정 후 본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하며,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서식7】

시설 위탁운영 신청 이사회 회의록

【주요 포함내용】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탁운영을 목적으로 한 이사회 회의록
- 법인(단체)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이상이 참석하여 서명날인
※ 서명날인 시 간인 날인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자체부담 및 수익재산, 보통재산 중 센터에 출연할 금액을 명시
- 기타 수탁사항에 관하여는 주요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서식1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_____ 경찰관서의 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위 임 장

본인 (위임하는 자)		대리인 (위임 받는 자)	
성 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주 소	
연 락 처		연 락 처	
위임 내용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관련 신청서류 접수 또는 운영계획 발표			

본인은 위임내용에 대해 위 대리인에게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법인·단체 대표)

(인)

여 수 시 장 귀하

수탁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별표1〕

구 성	내 용
1. 수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수탁자의 적격성]	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수탁자의 적격성]	
3. 시설운영 계획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1) 조직구성 (1)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지역사회 공신력]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공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가. 수탁자의 적격성

A. 법인의 적격성

A1. 법인유형·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센터 수탁 연계성

○ 수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

○ 기본현황

법인명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유형	전국법인(), 지역법인()
			법인종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재단()사단())
설립 허가일			설립등기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리관청	
설립근거 및 목적	※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연혁	※ 필요시 별지 작성			
주요사업				
법인시설	※ 직영/수탁시설 구분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연혁, 운영규정(이사회나 운영주체의 의결기관에 의해 채택된 확인자료 포함),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이록 사본 등

A2. 법인대표 및 이사회 적합성

○ 이사회 임원현황 : 명 (이사 명, 감사 명)

- 이사현황

기본인적사항						임 기 (최초임면일)	소지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특수관계 여 부 관 계 (○,×)
소속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직위 (직책)	주요 경력			

※ 증빙서류 첨부 :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임원 이력서 및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소지자격증 사본, 외부추천이사 관련 증빙 서류 등

- 감사현황

기본인적사항						임 기 (최초임면일)	소지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특수관계 여 부 관 계 (○,×)
소속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직위 (직책)	주요 경력			

※ 증빙서류 첨부 : 임원 이력서 및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소지자격증 사본 등

A3. 법인 회계집행의 적절한 수행(외부회계감사)

○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기적인 회계 감사 실시를 통한 점검 여부

구분	점검 기관	공인회계사명 및 회계법인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 내용	지적 건수 (건)	조치 내용	조치 건수 (건)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

증빙서류 첨부 : 법인의 감사보고서 결산서 및 부속 명세서 지적사항 개선처리 관련 공문 등(회계감사 실시 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A4. 최근 5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및 조치 결과 ▷ 신생법인 미해당

○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현황

연번	시설유형	시설명	설립년도	주소	연락처	비고

○ 법인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 별	점검 기간	수감 행정 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지적 내용	처분사항				재정적	신분 상	조치 내용	이행결과 (%) (이행건수/ 지적건수)
					행정적							
					계	시 정	주의	경고				
계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												

※ 증빙서류 첨부 :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 결과 공문, 조치결과 등(지도점검 실시 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 산하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 별	점검 기간	수감 행정 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지적 내용	처분사항				재정적	신분 상	조치 내용	이행결과 (%) (이행건수/ 지적건수)
					행정적							
					계	시 정	주의	경고				
계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												

※ 용어정의 : 행정적처분(시정, 주의, 경고 등), 재정적처분(여입, 보전, 추징, 환불), 신분상처분(주의, 훈계 등)

※ 지적사항을 고의 및 실수로 누락한 경우 "0점" 처리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증빙서류 첨부 :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 결과 공문, 조치결과 등

B. 법인의 사업능력

B1. 법인의 사업능력

○ 조직도

--

※ 증빙서류 첨부 : 법인 운영규정, 법인 산하시설 운영규정, 산하시설 종사 교육 관련 증빙자료

○ 법인 사무실 현황

- 소재지 :

- 면적 :

- 운영형태 :

※ 운영형태 작성방법 - 산하시설 내, 별도시설, 조직, 인력 등

※ 증빙서류 첨부 : 사무실 소유 및 임대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업무 상근인력 현황 : 명

부서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담당업무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특수관계 여부

※ 수탁시설 담당인력이 있을 시 비고란에 표기

※ 증빙서류 첨부 : 법인 직원대장 및 업무분장표, 직원 급여대장

※ 작성기간 : 2015년 ~ 현재

B2. 최근 5년간 법인의 이사회 활동

년도	개최일	참석인원	참여율	상정안건	사업계획 반영여부	비고

※ 증빙서류 첨부 : 이사회 회의록 등

※ 작성기간 : 2017년 ~ 현재

B3.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현황

○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총괄)

시설구분	계	직영시설	수탁시설	기타
개소수				

○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단위 : m² , 백만원)

구분	시설 종류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건축연면적)	운영기간	사업내용	법인지원금 (연간)	비고
직영								
수탁								

B4. 법인의 사업 수익, 후원금 정도

○ 최근 5년간(2017~현재)

연간 수입액 : 백만원

수입내역	금액	비고
계		
수익사업		판매, 관리, 생산 등
재산사업		임대료 등
회비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후원금		종교단체 등
기타		

※ 연도별 작성

B5.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사업의 평가 결과

○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선정실적 (* 신생법인 제외)

구분	지원사업명	신청시설명	사업내용	주관처	지원금액	비고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 사회복지 관련 공모사업 평가 산출

연도별	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 총수	공모결정 총 금액	공모금액 평균값 (금액/시설수)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 증빙서류 첨부 : 선정 공문 등(지원사업명 순서대로 증빙자료 첨부, 반드시 쪽번호 붙일 것)

※ 산출식 : $\text{공모실적} \div \text{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 수}$

※ 사회복지시설 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함

○ 사회복지시설 관련 평가결과(2017~2021)

년도	연번	평가대상 시설명	평가점수(총점)	비고
2017				
2018				
2019				
2020				
2021				

※ 평가결과 첨부(단, 최근 5년 동안 평가결과가 없을 시 평가시점과 가장 가까운 년도의 평가 결과 반영)

B6. 최근 5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

(* 신생법인 제외)

(2017~2021)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연도별	법인전입금 약정	법인전입금	이행율(%)	비고
계					

※ 증빙서류 첨부 : 계좌이체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나.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C. 시설장 및 종사자

C1.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 및 경력, 추진의지

○ 시설장(내정자) 경력 및 인적사항

임명방법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공개모집 법인임명						

○ 시설장(내정자) 자격증 취득 현황

취득일자	자격증 종류	시행기관	비고

구 분	근무시설명	근무기간	근무경력	연 락 처	증빙자료 페이지수
	계		년 월		
장애인복지시설	소 계				
노인복지시설	소 계				
장애인복지관	소 계				
아동복지시설	소 계				
기타복지시설	소 계				

※ 증빙서류 첨부 : 이력서, 소지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시설장(내정자) 경력관련 증빙서류 일체,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붙임)

○ 시설장(내정자)의 추진의지

-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구체적으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서, 시설장(내정자) 자원봉사 실적등

○ 시설장 공개채용 절차 계획서

- 시설장 공개모집 조건

- 인사위원회 구성 방안

※ 증빙서류 첨부 : 시설장 공개 채용 계획서, 시설장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구성 내역

C2. 종사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위한 급여 및 복리 후생

-

※ 증빙서류 첨부 : 종사자 인력구성 및 채용계획, 복리후생계획, 연도별 교육 실시 계획서, 인사관리 규정, 인사위원회(수탁시설) 구성 계획,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급 계획 등

C3.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지위보장

-

※ 증빙서류 첨부 :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지위보장 계획

D. 사업계획의 전문성

-

※ 증빙서류 첨부

- 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사업 계획서
- ② 조직, 인력배치, 종사자 전문성 정도 및 증진 방안
- ③ 예산서
- ④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비전과 목표
- ⑤ 중장기 계획안
- ⑥ 연도별 실행계획안(위탁 5년간)

E. 재정

E1. 자부담 확보방안

○ 법인 자부담 방법

※ 증빙서류 첨부 :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예산서,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 사본

○ 법인의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연간 수입액 : 백만원

수입내역	금액	비고
계		
수익사업		판매, 관리, 생산 등
재산사업		임대료 등
회비		인적구성 단체 등의 수입
후원금		종교단체 등
기타		

※ 연도별 작성

E2. 재정투자 계획

연도별	총예산액	자부담액					자부담비율 (%)	자부담액 확보 방법	비고
		계	법인 전입금	사업 수입	후원금	잡수입			
								※ 자부담액 예산과목별로 작성	

E3.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 재정의 구성 및 관리계획

※ 증빙서류 첨부 : 최근 5년간 법인 재무제표

다.

지역사회공신력

F. 지역사회 관계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과 공유복지 계획

-

- 이용자와 지역주민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적 기반

-

- 지역사회자원개발, 네트워크 형성, 자원봉사 확보 방안 등

-

F2. 지역민의 욕구 만족 및 이용을 위한 계획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계획

-

- 지역주민 욕구조사 계획

-

※ 증빙서류 첨부

- ① 사업계획서
- ②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홍보 계획 관련 자료

수탁(예정)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사업운영계획서(안)

1. 사업명

2.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별지작성 가능)

-
-

3. 조직 및 인원 구성계획

- 시설장 채용조건
- 종사자 확보계획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종사인력 활용 및 역량강화 계획
 - 직원에 대한 업무평가, 보수교육 계획 등

※ 구체적으로 작성

- 기관 각종 운영규정

-

※ 운영규정 별첨

4. 사업추진계획

-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구체적 작성)

-
-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특성화 계획(구체적 작성)

-
-

(3)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

- 의무적 및 특성화 프로그램 포함 구체적 작성(사업 지침에 의한 프로그램 수행)
-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요약서 별도작성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프로그램, 부담액 등 구체적 작성
(프로그램 등 사업계획요약서 별도작성)

5. 시설운영 계획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
-

(3) 재정운영계획

-
-

(4) 재정투자계획

-
-

(5) 재정확충방안

○

○

(6) 자부담 확보계획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출연금액							

※ 법인부담금 확인서 첨부

-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 사본, 법인재정부담약정서,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등 증명서류 첨부

(7) 시설 및 장비 관리 계획

○

(8) 세입·세출예산서(2022~2027)

○ 세입예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목		

○ 세출예산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산출내역
관	항	목		

※ 사회복지사업법 및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위탁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 산정

6.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신뢰성 등)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활용방안

- 지역사회자원 동원 방안 및 지역사회 자원개발 방안 등

(4) 향후 홍보계획의 타당성

7. 기타사항

□ 추가 및 미반영 사항 제시

○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발전방향

○ 지역복지발전방향 등

서 약 서

본 위탁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위탁운영체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위탁신청자는 운영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위탁신청자는 위탁운영체로 지정되는 경우 프로그램의 개발, 이에 대한 운영·관리를 충실히 하며, 특히 여수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여수시의 정책적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겠습니다.
3. 본 위탁신청자는 위탁운영체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제안 안내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위탁신청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어업면허 처분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어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0456	마을어업	-	10.0	삼산 초도	2021.12.12. 2031.12.11.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대동어촌계	10179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1. 11. 01.

여 수 시 장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1894	어류등 양식업	가두리 식	1.00	삼산 서도	2021.12.08. 2031.12.07.	100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	남**	11106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1. 11. 01.

여 수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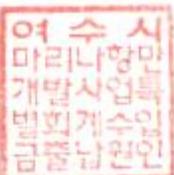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여수시 공인 조례 제6조, 7조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1.

여 수 시 장

1. 등록 및 폐기일 : 2021. 11. 1(월)
2. 등록 및 폐기사유 :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업무 수행
3. 등록 및 폐기내역

구분 (관리번호)	공 인 명	등록인영	관리부서	등록사유
2181(등록)	여수시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 계징수관인		해양항만복지과	마리나항만개발 사업 업무 수행
2182(등록)	여수시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 계분임징수관인		해양항만복지과	마리나항만개발 사업 업무 수행
2183(등록)	여수시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 계지출원인		해양항만복지과	마리나항만개발 사업 업무 수행
2184(등록)	여수시마리나항만개발사업특별회 계수입금출납원인		해양항만복지과	마리나항만개발 사업 업무 수행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민
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 월 /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669호

붙임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전문성 강화 및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8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박람회, 체육대회 참가 지원
3.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지역리더, 지역 커뮤니티 등의 워크숍, 박람회 참관,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연수 등
4.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제21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 설치·운영되는 읍·면·동의 자치센터는 같은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본다.

제24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범 설치·운영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장은 해당 읍·면·동의 기존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신하여 주민자치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날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⑥ ~ ⑧ (생략)</p>	<p>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전문성 강화 및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8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박람회, 체육대회 참가 지원 3.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지역리더, 지역 커뮤니티 등의 워크숍, 박람회 참관,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연수 등 4.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p><삭 제></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 월 /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670호

붙임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지켜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시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 월 / 일

여 수 시 장

권인봉



여수시 조례 제1671호

붙임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1부.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대학생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
여 여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아르바이트 운영계획 수립 등)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여수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여수시 의회사무국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계획
(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
회복지시설 등)에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
여 공공 행정의 경험 및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학생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기관 등
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2.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4조(운영시기) 시장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방법) ① 시장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 등에 시달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재능이 해당 기관 등에서 개발되어 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①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1회 이상 연수 설명과 연수 범위를 자세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및 지원부서,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나 부서의 아르바이트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획인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 2순위 : 차상위 계층

3. 3순위 :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4순위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 장이 증명하는 자)
5. 5순위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
6. 각 순위가 동일조건일 때 고학년을 우선 선정한다.
 - ② 공고일 기준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 참여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상기준) ① 시장은 참여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제9조(참여증 제작 및 전달) ① 시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증명서 또는 아르바이트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 월 /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672호

붙임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의”를 “편의”로 하고, “도모함”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대변기 칸막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3. “비상벨(안심벨을 포함한다)”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원시설중”을 “지원시설 중”으로 한다.

제4조 중 “깨끗하고 위생적으로”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대변기 칸막이와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깨끗하고 위생적으로”를 “위생적이며 안전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회이상”을 “3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u>위생편의</u>와 복지증진을 <u>도모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편의와</u> ----- ----- <u>도모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공중화장실 등</u>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u>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 유료화장실</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중화장실 등</u>”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u>공중화장실 · 개방화장실 · 이동화장실 · 간이화장실 · 유료화장실</u>을 말한다. 2. “<u>대변기 칸막이</u>”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u>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u>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3. “<u>비상벨(안심벨을 포함한다)</u>”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제4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생략)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신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제3조(적용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원시설
중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

-----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

제5조(설치기준) -----

-- 각 호-----.

1. ~ 5. (현행과 같음)

6.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대변기 칸막이와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생 략)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신 설>

-----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각 호-----
-----.

1. -- 3회 이상 -----.
2. (현행과 같음)
3. -----

----- 1회 이상 ---
-----.
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
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야생
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 월 /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673호

붙임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é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1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 월 / 일

여 수 시 장 권오봉



여수시 조례 제1674호

붙임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와 권리) ① 시민은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임무·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을 설정·운영하여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미 접종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안내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5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일시적 폐쇄
 -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것

제18조(감염병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봉사)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의2(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시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매년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여수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